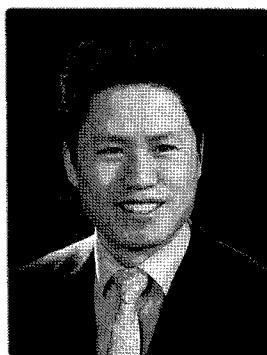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2650 판결 [상표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ROB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 지 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판례의 사실 관계

본 사건의 피고인은 “ROBERTA DI CAMERINO”의 일본 상표권자인 미쓰비시상사로부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액서세리를 직접 공급받아 한국으로 수입판매를 하고 있는 자이다. 해당 “ROBERTA DI CAMERINO”의 상표는 일본에서는 상기 상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상표품이다. 다만, 해당 상표는 국내에 상표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국내에서

“ROBERTA”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자로서, 일본의 미쓰비시상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해당 상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란?

진정상품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이라 함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

상품; genuine goods)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에서 정당하게 생산되고 지불된 상품을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시장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을 회색상품(gray market goods)이라고 하는데, 회색상품의 대표적인 경우가 병행수입이며, 위조상품이나 도난상품에 사용하는 흑색상품(black market goods)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최근 세계적인 물적 교류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병행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제품 및 패션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수입국의 상품가격이 타국보다 현저히 높을 때 발생한다.

상표권은 물질적인 독점배타적인 권리이지만 그 대상물을 물리적으로 사실상 지배할 수 없어 모용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침해될 수 있고 한번 훼손된 당해 상표의 신용, 이미지 등 가치는 손쉽게 회복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수입업자의 병행수입행위를 과연 상표권침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¹⁾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1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원칙에 의해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라에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고, 상표권은 서로 독립하여 병존하는 상태에 있다. 이를 1국 1상표의 원칙 및 상표권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은 다른 나라에서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행위만으로는 다른 나라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외국에서 제조한, 국내상표권자의 상표품과 동일한 상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상표품이 국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1) 금지론

파리조약 제6조 제3항에 의한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한다. 즉, 상표권은 각국마다 독립적이므로 진정상품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수입국의 상표권자 또는 전

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i) 병행수입품의 판매업자는 정당권리자의 광고 및 투자, 대고객 서비스체제에 무임승차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며, ii) 병행수입품은 품질관리가 허술하고 A/S가 미치지 않아 정당권리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고, iii) 금지권이 각국별로 미치지 않는다면 각국 별로 등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사용권 제도도 무의미해진다고 한다.

또한 선택적 판매방법론을 그 이론적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 즉 상품공급업자, 특히 고급소비자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제품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상품의 판매는 적어도 최소한의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일정한 판매방법과 능력을 가진 판매자로 한정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적 판매방법은 존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다른 루트를 통하여 동일 제품을 입수한 제3자의 상품배포는 라이센시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정경쟁에 의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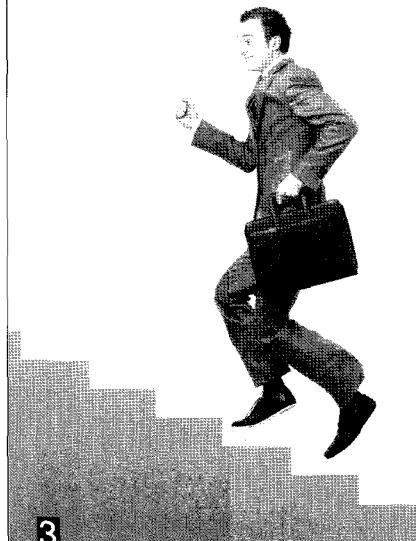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택된 판매자를 제외한 제3자의 병행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

(2) 허용론

상표를 일단 적법하게 사용하여 상품을 유통하였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권은 이미 소진된 것이므로 다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거나(국제적 소진이론) 또는 병행수입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해하지 않고 공중에게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상표의 기능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상표기능론) 이러한 태도는 독일 및 일본 법원의 태도이며 상표권의 속지주의가 타당한 범위도 상표보호의 정신에 비추어 상표의 기능에 대한 침해의 유무를 중시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구체적으로 i)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선택권이 있으며, ii) 병행수입을 금지하면 가격차별 및 재판매가격유지를 통해 국제시장을 통제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독점이윤만을 보장하는 것 이 되고, iii)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약화되고 품질보증기능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수요자의 신뢰이익을 해칠 염려가 크지 않다고 한다.



3

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의 유형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1)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품질보증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병행수입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품질, 형태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저명상표를 출처원으로 표시하는 상품으로써의 허용된 범위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병행수입의 유형³⁾

1)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그 상표권 또는 그 상표권의 사용권자가 외국에서 유통시킨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2)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국내에서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i) 국내의 전용 사용권자가 상표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만 하는 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나, ii) 국내의 전용 사용권자가 상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라이센시가 경주한 기업노력과 투자의 보호, 상품 품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병행수입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3) 국내의 상표권자가 타인이지만, 이들 간에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i)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총대리점 또는 독점적 판매업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품질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일반수요자는 국내의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지점적인 존재로 인식할 것으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ii) 국내외 상표권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

1)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169면

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iii)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지만, 자회사 각각이 그 상표에 대한 각국에서의 상표권자이고 시장 공급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내국의 제조자는 외국의 제조자와 콘째른 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제조자가 상이하여 품질이 상이하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4) 상표가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그 후 1국의 상표권이 양도된 경우와 같이, 당초에는 상표가 동일출처를 표시하는 것이었지만, 국내외의 상표 권리가 현재에는 법률적·경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5)内外국의 상표권자가 전혀 별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원칙이 적용되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방상표인 경우에 한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문제로 될 뿐이다.
- 6) 국내에 수입되면서 상품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포장 또는 내용물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병행수입 품은 A/S나 보증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병행수입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품질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

1 가짜 폴로 사건⁴⁾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국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는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경우,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버버리 사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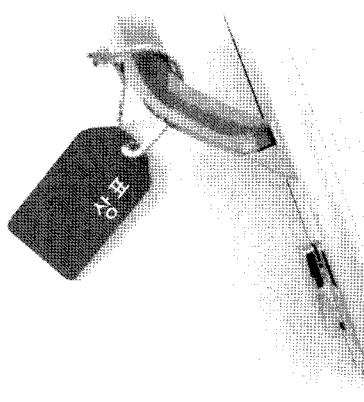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장은 원고 벼버리의 등록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벼버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 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벼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벼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

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스타크래프트 사건⁶⁾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

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 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수입제품은 이 사건 “STARCRAFT” 상표의 미국 내 상표권자인 블리자드 사(Blizzard Entertainment, Inc.)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소위 진정상품으로서, 미국 상표권자와 국내의 등록상표권자가 위 블리자드 사로 동일하고, 이 사건 “STARCRAFT” 상표와 관련하여 그 전용 사용권자인 원고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을 쌓아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국내 등록상표의 출처를 이 사건 상표권자인 블리자드 사가 아닌 원고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오락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디(CD)인 이 사건

2) 김원오, *상표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286면

3) 최성우, 주제별상표법, 469면

4)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도2191 판결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수입제품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로서 생산자나 판매국에 따라 부수적인 정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주된 내용인 게임의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등록상표품인 원고의 제품과 이 사건 수입제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국내 상표품이 이 사건 수입제품에 비해 시디 키(CD key)의 사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그 부수적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본 판례의 시사점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의 의해서는 명확하게 규율될 수 없어 상표제도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해석에 의해 그 허용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고 상표소유자와 소비자 및 병행수입업자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상표법외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 허용여부에 대해서 상표권의 효력은 각국별로 제한된다는 속지주의 이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하지 않으나 속지주의 이론

을 취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불허하여야 할 논리적인 필연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예는 없다.

다만,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내 상표권자 및 해외에서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한국의 등록상표권자인 고소인과, 일본에서의 상품 공급자인 미쓰비시상사 간에 어떠한 경제적 관계도 없고, 양자의 상품간의 관련성도 없으므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판매한 상품이 국내에서 더욱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도,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상표권이 존재하는 이상 외국의 유명한 상표품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항이므로 본 판례의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011. 12 |

6)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40423 판결